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에 대한 부산광역시 물리치료사들의 인식도 조사

김부영¹ · 박보람² · 송인경³ · 오태영⁴

¹장애전담 장한어린이집, ²서울남부복지관, ³창원한서병원, ⁴신라대학교 물리치료학과

A study of Korean Physical Therapist's Attitudes and Beliefs on Korean Government's National Long Term Care Insurance Program

Bu-Young Kim, P.T.¹ · Bo-Ram Park, P.T.²

In-Kyoung Song, P.T.³ · Tae-Young Oh, Ph.D. P.T.⁴

*jahan child care center¹ seoul nambu community relief center²
han seo hospital³ Dept of Physical Therapy, Silla University⁴*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scribe physical therapists' attitudes and beliefs towards Korean Government's National Long Term Care Insurance Program implemented last July 2008. **Design:** A survey research. **Methodology:** Participants were 143 physical therapists working in General Hospitals or University Hospitals in Busan, Korea. Each of the participants completed a questionnaire which was comprised of 22 questions. Among the 22 questions, 7 of these were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gender, age, career, etc. while 15 of these questions were dependent variables such as the subject's expectations and reactions on the said program, opinions of the participants on the impact of the program to old people's families and relatives, participant's sentiments on social effects of this program to the society, etc.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the 20th of July to the 5th of August, 2008. Data were analyzed by Chi-square test, frequency and cross tabs using SPSS/PC program. **Results:** Based on the survey conducted, it showed that 50.3% were female respondents, 53.8% were on their twenties, 31.5% of the total respondents were married and that a percentage of 82.4% had working experiences below 10 years. About 80.4% of respondents were satisfied of their jobs and 32.4% of the respondents graduated from three - year college degree, 49.3% of the respondents graduated from four-year college degree. 95.1% of the total respondents knew the existence of the national long term care insurance program of the government and almost 78% got the information of the said program via internet, news paper or T.V. About

86% of the respondents believe that there will be future improvements in the quality of life in Korea through the said program and 82% said that there will be an increase sense of responsibility among family members to take care of their old relatives. 67.2 % of respondents believe that problems regarding old people will be solved through the government's national long term care insurance program. In aspect of Physical Therapy, 50% of the respondents expected generation of more jobs especially to physical therapists and 95% of the respondents want to work in any position in the said program especially those are more experienced ones. **Conclusion:** Physical Therapists in Korea are aware of the existence of the National Long Term Care Insurance Program of the Korean Government. Based on the gathered results from the survey, many experienced physical therapists of the country wanted to acquire positions in the said program especially that their expertise are needed in the said field. Through this study, it is evident that many physical therapists of the country have positive vibes on the said program and are optimistic on the outcomes of the said insurance program.

Key words : attitude, belief, national long term care insurance, physical therapis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김용천 등, 2002), 최근 생활환경의 개선, 의료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노인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2007년 7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81만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9.9%에 이르러 이미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14.3%로 크게 증가하여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통계청, 2007).

노인에게 대두되는 문제점은 소득상실로 인한 빈곤의 문제, 노화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건강 약화, 고독과 소외의 문제,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역할 상실의 문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선엽, 1997).

특히 관절염, 중풍(뇌졸중), 당뇨병 등 각종 만성질환과 치매, 정신질환에 의한 생활 장애를 겪게 되고, 또한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간병기능 약화 등으로 노인 간병문제는 노후 최대 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이용석, 2003).

따라서 노인들의 빈곤,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독립

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김중호(1995)는 모든 국민이 나이와 경제 능력에 관계없이 효과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으로서의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며, 공평성과 도덕성 등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장기요양보험제도란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나 만성적인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의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보호·수발·간병하는 보험으로서 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연금보험과 함께 제5영역의 사회보험으로 나타난 보험이다(이용석, 2003).

우리나라는 2007년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2007년 4월 27일 공포됨으로써,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조추용(2007)에 따르면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 현금 급여로 구분하고,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장기요양 재가급여로 방문요양, 방문 목욕, 주간 및 야간 보호 등으로 세분하며, 시설 급여는 수급인을 장기요양시설 등에 입소시켜 장기 요양하는 것으로 하며, 특별현금 급여는 수급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령을 살펴보면 재가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조 1항 1호)란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으로부터 식사도움·화장실 도움·세면·목욕·말뱃·외출동행·간호서비스 등을 받으며, 집안청소 등 일상가사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한다.

또한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주·야간 보호시설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요양서비스 외에도 신체 또는 정신기능 유지 및 기능향상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가족 등이 불가피 하게 일정기간 동안 집을 비워야 할 때 노인을 단기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short stay) 6가지로 구분한다.

두 번째로 시설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조 1항 2호)가 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 34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 구체적으로 시설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공동생활시설(group home, 치매대응형 공동생활지원시설) 및 노인장기요양시설로 나눈다.

세 번째로 특별현금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조 1항 제 3호)가 있다. 특별현금급여는 다시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로 구분한다.

가족요양비란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수급자 또는 신체·정신·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등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제24조).

특례요양비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제25조).

요양병원 간병비는 수급자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

인전문 병원 또는 의료법에 의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병원으로부터 채용 또는 지시를 받은 간병인에게 간병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받을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현금급여(제26조)를 말한다.

2. 연구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효력을 발생하고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전문 인력의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식사 도움, 말뱃, 외출 도움 등의 다소 단순 업무가 포함된 반면, 방문 간호, 신체 활동 지원, 심신 기능의 유지 등의 업무는 매우 전문적인 업무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 업무가 아닌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 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생활지도원은 10인당 2인, 간호사 25인당 1인, 물리치료사는 1명(단, 100인 초과 시마다 1인을 추가)으로 배치하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 이에 따라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가진 노인을 위한 물리치료사의 수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 비율이 높은 부산지역의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정도를 알아봄으로써 이 제도를 통해 물리치료사로서의 준비가 얼마만큼 되어있는지를 알아보고 물리치료사의 입장에서 이 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다음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가진다.

부산 지역 물리치료사들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인식도와 물리치료사들의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에 참여하려는 욕구를 알아본다.

II. 조사 방법

1. 조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08년 7월 시행되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에 대한 물리치료사의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

해 부산광역시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8년 7월 20일부터 8월 5일 까지 실시하였고, 설문조사는 의원, 준 종합병원, 요양(재활)병원, 종합병원이상, 기타(복지관, 요양원)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들에게 협조를 구한 다음 본 연구자가 설문을 직접 배포 및 회수하였으며, 설문지는 총 150부를 배부하여 143부를 회수하여 95.3%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방법에 오류가 있거나 답변이 부실하여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는 자료는 없었으며 143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필요한 문항을 본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조사도구의 내용으로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인지도, 효과, 인력창출, 요양보호사, 관련시설 설립의 5부분과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6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다. 세부내용은(표 2-1)과 같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통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물리치료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도를 알기위해 알게 된 매체, 알고 있는 정도, 노인의 삶의 질 향상정도, 가족부양부담정도, 노인문제 해결정도, 보호사교육시간, 시설의 적정규모를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통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일반적 특성 중 현 근무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물리치료사 참여 의견, 요양보호사자격취득, 재가 서비스 설립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기 위하여 교차분석(chi-square)을 실시하였다.

표 2-1. 조사도구 세부사항

변 인	설문내용	문항 수
인지도	① 알게 된 매체 ② 알고 있는 정도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 효과	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② 가족들의 부양부담 경감에 미치는 영향 ③ 노인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	3
관련 직종의 일자리 창출효과	① 관련 직종의 일자리 창출효과 ② 물리치료사의 참여의견 ③ 물리치료사의 요양시설 취업의사	3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선호도	① 물리치료사의 요양기관 설립위한 자격증 취득 ② 물리치료사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취득을 위한 50시간 교육시간에 대한 의견 ③ 자격증 취득 후 요양 기관 설립 의견	3
관련시설 설립에 관한 참여도	① 서비스 중 재가 서비스 제공기관 설립 ② 서비스 시설의 적정 규모 ③ 물리치료사가 요양보호사로 취업했을 때 수입	3
	소계	14
일반적 특성	① 성별 ② 결혼여부 ③ 연령 ④ 학력 ⑤ 현 근무처	9
	⑥ 근무경력 ⑦ 연봉 ⑧ 근무만족도 ⑨ 이직희수	
	소계	9

Ⅲ. 연구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성별, 결혼여부, 연령, 학력, 현 근무처, 근무경력, 연봉, 근무만족도, 이직횟수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여자 50.3%, 남자 49.83%로 비슷한 비율이었으며, 미혼 68.5%, 기혼 31.5%로 미혼이 기혼보다 2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20대 53.8%, 30대 37.1%, 40대 8.4%, 50대 0.7% 순으로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4년제가 49.0%로 가장 많았으며, 3년제 32.2%, 대학원 석사 16.8%, 대학원 박사 1.4%순으로 나타났다.

현 근무처에 대한 응답은 종합병원 근무자가 53.8%로 가장 많았으며, 요양(재활)병원 30.1%, 종합병원 12.6%,

의원 2.1%, 기타(복지관, 요양원) 1.4%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에 관한 질문에는 3년 이하 경력자가 30.8%, 3~5년 경력자 30.8%로 같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5~10년 20.3%, 10~15년 7.0%, 15년 이상 10.5%로 대부분이 10년 이하의 근무경력자로 나타났다.

연봉에 관한 질문은 2000~2500만원 42.1%, 2000만원 이하 23.1%, 2500~3000만원 16.1%, 3000~4000만원 11.2%, 4000만 원 이상 7.7%순으로 응답하였다.

근무만족도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만족) 46.9%, 조금 만족 25.2%, 매우만족 8.4%, 조금 불만족 16.8%, 매우 불만족 2.8%순으로 나타나 80.4%가 현 근무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횟수는 1~2번 55.2%로 가장 많았고, 0번 35.0%, 3~4번 7.7%, 5~6번 2.1%로 나타났다(표 3-1).

표 3-1.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명)	백분율(%)	항목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71	49.7	근무경력	3년 이하	44	30.8
	여자	72	50.3		3~5년	44	30.8
	전체	143	100		5~10년	29	20.3
결혼 여부	미혼	98	68.5		10~15년	10	7.0
	기혼	45	31.5		15년 이상	15	10.5
	전체	143	100		전체	142	99.3
연령	20대	77	53.8	연봉	2000이하	33	23.1
	30대	53	37.1		2000~2500	60	42.0
	40대	12	8.4		2500~3000	23	16.1
	50대	1	0.7		3000~40000	16	11.2
	전체	143	100		4000이상	11	7.7
학력	3년제	46	32.2		전체	143	100
	4년제	70	49.0	근무만족도	매우만족	12	8.4
	대학원석사	24	16.8		조금만족	36	25.2
	대학원박사	2	1.4		보통만족	67	46.9
	전체	142	99.3		조금불만족	24	16.8
현 근무처	의원	3	2.1		매우불만족	4	2.8
	준 종합병원	18	12.6	전체	143	100	
	요양(재활)병원	43	30.1	이직횟수	0	50	35.0
	종합병원	77	53.8		1~2	79	55.2
	기타	2	1.4		3~4	11	7.7
	전체	143	100		5~6	3	2.1
			전체		143	100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

1) 인지도

(1) 인지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지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다면 어느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인터넷과 TV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각각 28.0%, 27.3%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신문 23.1%, 본설문지 4.9%, 라디오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0.7%순으로 나타났다(표 3-2).

표 3-2. 인지경로

	TV	신문	인터넷	라디오	본설문지
빈도(명)	39	33	40	1	7
퍼센트(%)	27.3	23.1	28.0	0.7	4.9

(2) 인지 정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조금 안다 56.6%, 안다 22.4%, 모른다 14.7%, 매우 잘안다 4.9%, 전혀 모른다 1.4%순으로 응답하였다(표3-3).

표 3-3. 인지정도

	전혀 모른다	모른다	조금 안다	안다	매우 잘안다
빈도(명)	2	21	81	32	7
퍼센트(%)	1.4	14.7	56.6	22.4	4.9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 효과

(1)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 효과로 ‘이 제도를 통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보통이다 42.7%, 그렇다 40.6%, 그렇지 않다 11.9%, 매우 그렇다 2.8%, 매우 그렇지 않다 2.1% 순으로 응답하였다(표 3-4).

(2) 가족들의 부양부담 경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들의 노인 부양부담경감에 대해 위해 ‘이 제도를 통하여 가족들의 부양부담이 실제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보통이다 42.7%, 그렇다 38.5%, 그렇지 않다 15.4%, 매우 그렇지 않다 2.1%, 매우 그렇다 1.4%순으로 응답하였다(표 3-4).

(3) 노인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

‘이 제도를 통하여 노인들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가정파탄, 경제적 어려움)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보통이다 44.1%, 그렇지 않다 28.7%, 그렇다 21.7%, 매우 그렇지 않다 4.2%, 매우 그렇다 1.4% 순으로 응답하였다(표 3-4).

3) 관련 직종의 일자리 창출효과

(1) 관련 직종의 일자리 창출효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전문 인력의 필요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 된다. 이에 대한 인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이 제도를 통하여 물리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병 인력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보통이 41.3%, 좋다 35.7%, 좋지 않다 16.1%, 매우 좋다 4.2%, 매우 좋지 않다 2.8%의 비

표 3-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과

단위 : %, (명)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2.1(3)	11.9(17)	42.7(61)	40.6(58)	2.8(4)
가족들의 부양 경감에 미치는 영향	2.1(3)	15.4(22)	42.7(61)	38.5(55)	1.4(2)
노인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	4.2(6)	28.7(41)	44.1(63)	21.7(31)	1.4(2)

율로 응답하였다(표 3-5).

(2) 물리치료사의 참여 의견

물리치료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참여에 대한 인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물리치료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제공자로서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좋다 41.3%, 매우 좋다 27.3%, 보통이다 26.6%, 좋지 않다 4.9% 순으로 나타났다(표 3-5).

(3) 물리치료사의 요양시설 취업의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요양시설의 인력이 증가된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의 취업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요양시설의 구성원으로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보통이다 46.2%, 좋다 31.5%, 좋지 않다 9.1%, 매우 좋다 8.4%, 매우 좋지 않다 4.9% 순으로 응답하였다(표 3-5).

4)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선호도

(1) 물리치료사의 요양기관 설립을 위한 자격증 취득

물리치료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요양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요양기관 설립을 위하여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물리치료사가 요양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라는 질문에 보통이다 33.6% 좋다 32.2%, 좋지 않다 16.8%, 매우 좋다 12.6%, 매우 좋지 않다 4.9%의 비율로 응답하였다(표 3-6).

(2) 물리치료사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취득을 위한 50시간 교육시간에 대한 의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위해 일정의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국가자격증 소지자인 물리치료사는 50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하면 1급 자격이 주어진다. 물리치료사의 50시간 교육시간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물리치료사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5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이라는 질문에 보통이다 37.8%, 좋지 않다 28.0%, 좋다16.8%, 매우 좋지 않다 16.1%, 매우 좋다 1.4%순으로 응답하였다(표 3-6).

(3) 자격증 취득 후 요양기관 설립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요양기관 설립의사를 알아보기 위해 ‘물리치료사가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요양기관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좋다 37.8%, 보통이다 35%, 매우 좋다 16.1%, 좋지 않다 9.1%, 매우 좋지 않다 2.1%순의 비율로 나타났다(표 3-6).

표 3-5. 관련 직종의 일자리 창출효과

단위 : %, (명)

	매우 좋지않다	좋지않다	보통이다	좋다	매우 좋다
관련 직종의 일자리 창출효과	2,8(4)	16,1(23)	41,3(59)	35,7(51)	4,2((6)
물리치료사의 참여의견	0	4,9(7)	26,6(38)	41,3(59)	27,3(39)
요양시설의 취업의사	4,9(7)	9,1(13)	46,2(66)	31,5(45)	8,4(12)

표 3-6.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단위 : %, (명)

	매우 좋지않다	좋지않다	보통이다	좋다	매우 좋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의견	4,9(7)	16,8(24)	33,6(48)	32,2(46)	12,6(18)
50시간의 교육시간	16,1(23)	28,0(40)	37,8(54)	16,8(24)	1,4(2)
요양기관 설립의사	2,1(3)	9,1(13)	35(50)	37,8(54)	16,1(23)

5) 관련시설 설립에 관한 참여도

(1) 서비스 중 재가 서비스 제공기관 설립

재가급여 시설의 설립의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요양보험 서비스 중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설립할 의향은 있으신지요?’라는 질문에 보통이다 41.3%, 그렇다 25.9%, 그렇지 않다 22.4%, 매우 그렇지 않다 5.6%, 매우 그렇다 4.9% 순의 비율로 응답하였다(표 3-7).

(2) 서비스 공급자의 적정 규모

요양시설을 설립·운영하였을 때, 서비스 공급자의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노인 요양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한다면 서비스 공급자(예-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의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20인 이하 25.9%, 15인 이하 23.1%, 10인 이하 21.7%, 25인 이하 16.1%, 5인 이하 8.4% 순의 비율로 나타났다(표 3-8).

(3) 물리치료사가 요양보호사로 취업했을 때 수입

물리치료사가 요양보호사로 취업했을 때 수입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물리치료사가 요양보호

사로 취업했을 때 월 보수(수입)는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200~250만원 33.6%, 300만 원 이상 26.6%, 250~300만원 24.5%, 150~200만원 14%, 100~150만원 0.7% 순의 비율로 응답하였다(표 3-9).

6) 현 근무처와 물리치료사 참여의견의 교차분석

현 근무처와 물리치료사의 참여의견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에서 참여하겠다는 의견은 의원 100%, 준 종합병원 94.4%, 요양(재활)병원 95.3%, 종합병원 94.8%, 기타(복지관, 요양원) 100%의 비율을 나타냈다. 현 근무처와 물리치료사 참여의견에 있어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모든 근무처의 물리치료사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0).

7) 현 근무처와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의견 교차분석

현 근무처와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의견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에서 자격을 취득하겠다는 의견은 의원 66.6%, 준 종합병원 66.6%, 요양(재활)병원 81.3%, 종합병원 80.5%, 기타(복지관, 요양원) 50%의 비율을 나타냈다. 현 근무처와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의견에 있어

표 3-7. 재가 서비스 제공기관 설립의견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빈도(명)	8	32	59	37	7
퍼센트(%)	5.6	22.4	41.3	25.9	4.9

표 3-8. 서비스 공급자의 적정 규모의견

	5인 이하	10인 이하	15인 이하	20인 이하	25인 이하
빈도(명)	12	31	33	37	23
퍼센트(%)	8.4	21.7	23.1	25.9	16.1

표 3-9. 요양보호사로 취업했을 때 적정수입

	100~150	150~200	200~250	250~300	300이상
빈도(명)	1	20	48	35	38
퍼센트(%)	0.7	14	33.6	24.5	26.6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모든 근무처의 물리치료사가 취득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1).

8) 현 근무처와 재가 서비스 제공기관 설립의견 교차분석

현 근무처와 재가 서비스 제공기관 설립 의견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에서 설립을 하겠다는 의견은 의원

66.6%, 준 종합병원 61.6%, 요양(재활)병원 72%, 종합병원 75.3%, 기타(복지관, 요양원) 50%의 비율을 나타냈다. 현 근무처와 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설립 의견에 있어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모든 근무처의 물리치료사가 설립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2).

표 3-10. 현 근무처와 물리치료사의 참여 의견

빈도

	물리치료사의 참여의견					전체	X2	p
	매우 좋지않다	좋지않다	보통이다	좋다	매우 좋다			
의원	0	0	1	2	0	3		
준종합병원	0	1	4	5	8	18		
현 근무처	0	2	15	17	9	43	9.41	0.47
요양(재활)병원	0	2	15	17	9	43		
종합병원	0	4	18	33	22	77		
기타(복지관, 요양원)	0	0	0	2	0	2		
전체	0	7	38	59	39	143		

표 3-11. 현 근무처와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의견

빈도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의견					전체	X2	P
	매우 좋지않다	좋지않다	보통이다	좋다	매우 좋다			
의원	0	1	1	1	0	3		
준종합병원	2	4	6	3	3	18		
현 근무처	2	6	19	11	5	43	11.78	0.11
요양(재활)병원	2	6	19	11	5	43		
종합병원	3	12	21	31	10	77		
기타(복지관,요양원)	0	1	1	0	0	2		
전체	7	24	48	46	18	143		

표 3-12. 현근무처와 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설립 의견

빈도

	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설립의견					전체	X2	p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의원	0	1	1	1	0	3		
준종합병원	2	5	5	6	0	18		
현 근무처	2	10	20	10	1	43	8.00	0.17
요양(재활)병원	2	10	20	10	1	43		
종합병원	4	15	32	20	6	77		
기타(복지관,요양원)	0	1	1	0	0	2		
전체	8	32	59	37	7	143		

IV. 고찰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을 설립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독일이 1970년대 중반부터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필요성이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되어 1994년에 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되었으며, 일본에서는 1987년에 ‘개호복지사법’이 성립되어 2000년부터 개호복지사와 홈헬퍼 두 가지 인력으로 구분하여 개호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홍완식, 1990).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에서는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하여 전 국민에게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홍보하였으며, 관련 직종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2008년 박옥래의 연구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공무원과 시설 종사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알고 있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59%로 가장 많아 대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식경로를 분석한 결과 업무로 인하여 인지한 경우가 55%로 가장 많았으며, 방송 16.1%, 언론 14.5%, 인터넷 11%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간호사들의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인식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79%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지경로는 학술 대회 및 보수교육, 방송보도, 인터넷, 기타, 주변 사람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권민영, 2008).

또한 수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재가 노인들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조금 알고 있다”가 46.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인지경로는 TV가 62%로 가장 많았으며, 신문 17%, 라디오 7.3%, 이웃 5.3%순으로 나타났다고(김할란, 2008).

본 연구에서 95%의 응답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87%의 응답자가 인터넷, 신문, TV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82%의 응답자가 가족들의 부양부담

이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사회복지공무원 및 시설종사자들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을 시 부양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 응답이 71%였다(박옥래, 2008).

또한 이명완(1995)의 연구에서는 노인문제를 경제적 문제, 건강보호 문제, 여가 문제, 소외와 고독문제로 구분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소희(1993)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에 관한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노인의 인지도를 비교한 결과 사회복지사와 수혜노인 모두 물리치료 서비스에 대해 높은 욕구를 나타내었다.

서비스 제공자로서 작업치료사들은 양영애(2007)의 연구에서 노인들의 일상생활(ADL), 인지기능, 문제행동, 간호처치, 재활욕구 등 5개의 평가 영역은 매일 수행하는 업무의 하나라고 생각하며 작업치료사는 신체장애, 정신장애, 재가서비스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들에게 평가자의 역할을 포함하여 방문재활 및 기능훈련 등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간호사들은 노인의 질환을 고도의 기술 집약적인 치유(cure) 중심의 서비스보다 장기적인 간호(care) 중심의 서비스가 요구된다고 보며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 의료원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간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고루 습득하여 노인 간호의 책임을 담당하는 전문적 간호 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신성례, 오복자, 2003).

본 연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제공자로서 물리치료사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 중 재가서비스 제공 기관 설립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본 연구는 2008년 7월 20일부터 8월 5일 까지 실시하였고, 설문조사는 부산지역 내 의원, 준 종합병원, 요양(재활)병원, 종합병원이상, 기타(복지관, 요양원)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143명의 물리치료사들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물리치료사의 인식도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알게 된 경로는 인터넷과 TV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각각 28.0%, 27.3%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정도는 조금 안다 56.6%, 안다 22.4%, 모른다 14.7%, 매우 잘 안다 4.9%, 전혀 모른다 1.4%순으로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 효과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83.3%가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82.6%가 가족들의 부양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67.2%가 사회문제(가정파탄, 경제적 어려움)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넷째, 관련 직종의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한 질문에서 81.2%비율의 물리치료사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였고, 95.2%가 서비스 제공자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86.1%가 요양시설 취업의사를 밝혔다.

특히 현 근무처와 참여의사간의 교차 분석에서는 근무처와 상관없이 모든 응답자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선호도 조사에서 78.4%의 물리치료사가 요양기관 설립을 위한 자격증을 취득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 근무처와의 교차분석 결과에서는 모든 근무처의 물리치료사가 취득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치료사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취득을 위한 50시간 교육시간에 대해 81.9%가 부정적이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8.9%가 자격증 취득 후 요양기관을 설립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관련시설 설립에 관한 참여도에서 72.1%가 재가 서비스 제공기관 설립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 근무처와 재가 서비스 제공기관 설립 의견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모든 근무처의 물리치료사가 설립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공급자의 적정 규모는 20인 이하 25.9%, 15인 이하 23.1%, 10인 이하 21.7%, 25인 이하 16.1%, 5인 이하 8.4% 순의 비율로 나타났다. 물리치료사가 요양보호사로 취업했을 때 수입에 대한 질문에는 200~250만원 33.6%, 300만 원 이상 26.6%, 250~300만원 24.5%, 150~200만원 14%, 100~150만원 0.7% 순의 비율로 응답하였다.

참고문헌

- 김용천 외 7. 노인물리치료학. 현문사 2002:11-12
- 김종호. 노인장기요양정책의 필요성과 정책대안. 한국 지역 복지 정책학회 1995
- 김선엽. 지방도시 거주 노인들의 재활서비스에 대한 요구 조사 - 안동시 거주 노인들을 중심으로 - 한국 전문물리치료학회지 1997;4(3):2-3
- 조추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확보에 관한 연구. 한국 노년학 연구 2007:14-15
- 전용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보 제고 방안. 한국 노년학 연구 2008;28(3):687-706.
- 양영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위한 작업치료사의 요구. 고령자, 치매작업치료학회지 2007; 1(2):1-25.
- 김소희, 김미혜. 사회 복지 서비스 욕구에 관한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노인의 인지비교연구. 한국노년학연구 1993;13(2):120-134.
- 신성래, 오복자. 노인복지시설과 일반병원중심의 노인전문간호사 수요추계연구. 노인간호학회지 2003;5(2):220-224
- 이명완.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정책. 경희대학교 최고관리자 과정 논문집 1995:170-179
- 이용석.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 보험학회지 2003; 66:03-12.
- 박옥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 공무원과 시설종사자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

2008:42-45

권민영.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방문간호사의 인식.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18-19

김할란. 재가노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식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25-26

논문접수일(Date Received) : 2011년 3월 20일

논문수정일(Date Revised) : 2011년 3월 25일

논문게제승인일(Date Accepted) : 2011년 3월 26일
